

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구현

의안번호

제73호

논산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

제 출 자	이태모 의원 외 5명
제출연월일	2023. 5. 16.

# 논산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73호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5. 16.

대표발의자 : 이태모

공동발의자 : 김남충, 조배식,  
조용훈, 서승필,  
허명숙

## 1. 제안이유

논산시 관내 아동, 청소년, 여성 등 안전취약계층을 범죄피해,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과 정의 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취약지역의 선정 기준 (안 제4조)
- 다. 사업추진 범위 (안 제5조)
- 라. 협력체계 구축 (안 제6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  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
- 나. 입법예고 : 2023. 5. 16. ~ 5. 20.( 5일간)

## □ 조례안

논산시의회 조례 제 호

# 논산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논산시 관내 아동, 청소년, 여성 등이 학교폭력, 범죄피해,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안심귀가”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안심귀가도우미”란 일몰시간 이후 여성, 청소년, 아동 등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 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근로자 등을 말한다.
3. “안심조명시설”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.
4. “안전시설물”이란 CCTV, 안심조명시설, 보안등, 비상벨,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.)은 안전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취약지역의 선정)**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.

1. 사건·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
2.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
3. 아동·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
4. 여성 및 관련 단체가 취약지역으로 제안한 지역 등

제5조(사업추진) 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안심귀가도우미 채용 및 운영
2. 안전시설물의 설치
3.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
4.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
5. 충청남도 안심귀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한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,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7조(관련부서의 협조) 안심귀가 환경 조성 관련 사업추진 부서는 총괄부서(본 조례의 소관부서를 말한다)의 협조 요청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이태모 의원 외 5명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- 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-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## 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-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